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2202277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1.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2
※ 참고자료	5
1.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5

I. 개요

1. 정부안(의안번호 제227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4. 7. 26.
- (3) 회 부 일 : 2024. 7.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착한”을 “붙인”으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함유”를 “포함”으로,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가금”을 “조류”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국민이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고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Ⅱ. 검토의견

1.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 정부가 제출한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법상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부착한”을 “붙인”으로 개정하고,
- ② 「식품안전기본법」은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함유”를 “포함”으로,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각각 개정하며,
- ③ 「식품위생법」은 “함유”를 “포함”으로, “가금”을 “조류”로, “부착한”을 “붙인”으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임.

< 법률안의 개정용어 일람 >

법률명	해당 조문	현행 용어	개정용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9호	부착한	붙인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제2항제6호	부의하는	회의에 부치는
	제15조제2항	함유	포함
	제24조제3항	판명된	밝혀진
식품위생법	제6조제1호 및 제2호 제15조제1항	함유	포함
	제93조제1항제3호	가금	조류
	제97조제9호	부착한	붙인

□ 국회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바꾸기 위하여 「알기 쉬운 법률 용어 2020」 발간 등을 통해 법률용어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법 제처도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어려운 용어 및 복잡한 문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해오고 있는데,

제정안에서 개정하려는 상기의 용어들은 국회 법제실의 「알기 쉬운 법률용어 2020」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정비를 권고한 바가 있음.¹⁾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정비 권고 용어 발췌 >

정비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부착하다	附着	붙이다, 부착하다
부의하다	附議	(회의에)부치다, (심의에) 부치다
함유하다	含有	함유하다, 포함되어 있다, 들어 있다
판명되다	判明	밝혀짐, 판명

□ 제정안과 같이 법 문장의 표기를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가까운 용어로 변경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제정안은 「식품위생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가금” 인플루엔자를 “조류” 인플루엔자로 개정하고 있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가금(家禽)”이란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을 말하며, “조류”란 조강²⁾의 척추동물을 일상적으로

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 증보판 [부록] 정비 권고 용어

통틀어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고, 국회 법제실의 「알기 쉬운 법률용어 2020」에서도 “가금 인플루엔자”를 “조류 인플루엔자”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가목3)의 제1종 가축전염병에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가금”을 “조류”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493

2) 현존하는 척추동물을 분류하는 관례적인 분류법은 모든 해부학적, 생리학적 특징에 관한 전통적인 해석에 기초하여 7개의 강(綱)으로 분류하는 것인데, 7개의 강 중 하나가 조강(Aves)임.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 계곡열, 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캐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참고]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43조(벌칙)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u>부착한</u> 게시문 또는 봉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9. ----- <u>붙인</u> ----- -----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7조(식품안전정책위원회) ① (생략)	제7조(식품안전정책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②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u>부의하는</u> 사항	6. ----- <u>회의에 부치는</u> ----
제15조(긴급대응) ① (생략)	제15조(긴급대응)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산·판매등이 되고 있는 식품등이 유해물질을 <u>함유한</u>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	② ----- ----- ---- <u>포함</u> -----

막의 사유로 위해우려가 제기되고 그
로 인하여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
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대응방안
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긴급대응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
의를 거치는 것이 긴급대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위원회의 심
의를 거칠 수 있다.

1. ~ 6. (생략)

③ ~ ⑤ (생략)

제24조(정보공개 등) ①·② (생략)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식품등 및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illegible]

1.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정보공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밝혀

진 _____

④ · ⑤ (현행과 같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6조(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 ----- -. ----- ----- ----- ----- ----- ----- -----.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1. ----- ----- ----- 포함 ----- -----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2. ----- 포함 ----- ----- ----- ----- -----
제15조(위해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이 제4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식품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것이 위해식품등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위해평가) ① ----- ----- 포함 ----- ----- ----- ----- ----- ----- -----.

② ~ ⑥ (생 략)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2. (생 략) 3. <u>가금</u> 인플루엔자 ② ~ ④ (생 략)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 략) 9. 제7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u>부착한</u> 봉인 또는 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10.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3조(벌칙)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조류</u>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 ----- -----. 1. ~ 8. (현행과 같음) 9. ----- <u>붙인</u> ----- ----- 10. (현행과 같음)
--	---